

■ 세법연구 07-07

# 금융허브 국가들의 조세제도

2007. 11

전병목 · 기은선 · 정희선  
조진권 · 박임수

세 법 연 구 센 터

 **Kipf** 한국조세연구원

# 목 차

I. 서 론.....	9
II. 아일랜드.....	10
1. 아일랜드의 외자유치 현황.....	10
가. 외자유치 실적.....	10
나. 외자유치 성공요인.....	12
2. 소득과세제도 .....	14
가. 소득세제도 개관.....	14
나. 금융소득 과세제도.....	18
3. 국제투자소득 과세제도 .....	24
가. 해외투자국에서의 과세.....	24
나. 아일랜드에서의 과세 .....	24
4. 시사점 .....	26
III. 두바이(Dubai).....	29
1. 금융부문(Financial Sector) 현황.....	29
가. 금융시장과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29
나. 금융시장 현황(은행, 보험, 주식시장).....	30
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DIFC) .....	32
2. 소득과세제도 .....	33
가. 법인세 .....	33
나. 소득세와 원천징수세제 .....	34
다. 금융소득세제 .....	34
3. 국제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	34

가. 해외소득면제	34
나. 조세조약	35
다. 역외금융센터(OFC)와 조세피난처	35
4. 시사점	36
가. 재정측면	36
나. 금융허브로의 발전 요소	36
다. 기타 고려사항	37
<b>Ⅳ. 싱가포르</b>	<b>38</b>
1. 금융부문 현황	38
가. 국제금융센터	38
나. 금융시장과 국내총생산(GDP)	39
다. 금융부문 현황	40
2. 소득과세제도	44
가. 조세제도 개요	45
나. 소득세 세율	45
다. 금융소득 과세	46
3. 국제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56
가. 해외소득 면제	56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57
4. 시사점	59
<b>Ⅴ. 홍콩</b>	<b>62</b>
1. 금융부문 현황	62
2. 소득 관련 조세제도	69
가. 일반조세제도	69
나. 금융소득 관련 조세제도	72
3. 시사점	73
가. 재정측면	73

나. 금융허브로 성장한 요인.....	74
참고문헌.....	76

## 표목차

〈표 II-1〉 유럽각국들의 평균 GDP 성장률(2000~2004년).....	10
〈표 II-2〉 아일랜드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11
〈표 II-3〉 아일랜드의 산업별 외자법인 분포.....	11
〈표 II-4〉 아일랜드 내 외자기업에 대한 혜택.....	13
〈표 II-5〉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16
〈표 II-6〉 아일랜드의 소득세율.....	18
〈표 II-7〉 12.5%로 과세되는 이자소득.....	19
〈표 II-8〉 아일랜드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요약.....	23
〈표 II-9〉 법인세수의 비중.....	26
〈표 II-10〉 금융허브 발전에 기여한 조세정책적 요인.....	27
〈표 II-11〉 금융허브 발전에 기여한 비조세정책적 요인.....	28
〈표 III-1〉 두바이의 아랍에미리트 내 비중.....	29
〈표 III-2〉 두바이의 은행 현황(2006년 9월) .....	30
〈표 III-3〉 DFM 상장기업 수 추이.....	31
〈표 III-4〉 DFM의 거래량 구성(2005년).....	31
〈표 III-5〉 DFM의 거래액 구성(2005년).....	32
〈표 III-6〉 금융허브로의 발전 요소.....	37
〈표 IV-1〉 싱가포르정부 잉여자금의 운용.....	39
〈표 IV-2〉 싱가포르 GDP의 구성(2006년).....	40
〈표 IV-3〉 주요 금융기관 현황.....	41
〈표 IV-4〉 주요 금융허브의 외국계 은행 현황(2004년 9월 기준).....	41
〈표 IV-5〉 주요 금융허브 내 은행의 자산구성 .....	42
〈표 IV-6〉 주요 금융허브의 은행 여수신 규모 .....	42

〈표 IV-7〉 주요 금융허브의 외환거래 규모	42
〈표 IV-8〉 주요 금융허브의 주식시장	43
〈표 IV-9〉 주요 금융허브의 채권시장	43
〈표 IV-10〉 싱가포르의 소득과세제도	44
〈표 IV-11〉 개인소득세 과세구간 및 세율	46
〈표 IV-12〉 비거주자 소득과세제도	46
〈표 IV-13〉 싱가포르의 기업과세제도	47
〈표 IV-14〉 원천징수제도	49
〈표 IV-15〉 배당관련 과세제도	50
〈표 IV-16〉 이중과세방지제도	50
〈표 IV-17〉 싱가포르의 금융 관련 세율감면 현황	54
〈표 IV-18〉 운영총활본부에 대한 과세제도	55
〈표 IV-19〉 국제투자소득관련 과세제도	56
〈표 IV-20〉 유효싱가포르세율의 계산	58
〈표 IV-21〉 외국납부세액공제의 Re-grossed Foreign Income	58
〈표 IV-22〉 금융허브 성공의 비조세적 요인	60
〈표 V-1〉 거시경제 현황	62
〈표 V-2〉 외국인직접투자	63
〈표 V-3〉 주요투자국	63
〈표 V-4〉 외국기업 진출 현황	64
〈표 V-5〉 업종별 지역본부의 수(2006년 기준)	64
〈표 V-6〉 주요 금융지표	65
〈표 V-7〉 홍콩 금융기관 수	66
〈표 V-8〉 홍콩에서 영업중인 세계 상위 500개 은행	66
〈표 V-9〉 홍콩의 증권시장	67
〈표 V-10〉 홍콩 증권시장의 투자자 구성	68
〈표 V-11〉 홍콩 증권시장 국외 투자자의 국가 구성	68
〈표 V-12〉 근로소득세 과세구간 및 세율	71

## 그림목차

[그림 V-1] 홍콩정부의 재정수지 ..... 73

## I. 서 론

우리나라의 향후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 제조업에 기반하여 고도성장을 구가하였으나 이러한 성장정책이 향후의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현재보다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가 증가하여야 함에는 누구나 동의하고 있으나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유력한 발전모델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금융허브로의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먼저 금융허브로 발전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지역이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 이외의 교육, 문화, 지리, 사회적 요소의 뒷받침도 동반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 중 인력 및 기업의 국제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선행 발전국가들을 분석한다. 조세제도의 경우 다른 요인들에 비해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기업부문에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분석 대상 국가는 아일랜드, UAE(두바이), 싱가포르, 홍콩 등의 국가(혹은 도시)로 설정하였다. 아일랜드는 유럽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두바이는 비교적 최근에 금융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우리나라가 향후 금융허브로 성장하기 위해 벤치마킹의 필요성과 함께 실질적인 경쟁상대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조세제도에 대한 분석은 우선 각 나라의 전반적인 소득 관련 과세제도를 살펴본다. 일반적인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살펴보고 다시 금융소득과 관련된 조세제도를 밀도 있게 고찰하였다. 금융허브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지역분부 등 국제간 소득이동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영하여 국제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상세히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에서는 각 국가가 금융허브로 발전할 수 있었던 재정적 요인, 조세적 요인, 비조세적 요인들을 제시한다.

## II. 아일랜드

### 1. 아일랜드의 외자유치 현황

#### 가. 외자유치 실적

##### 경제성장률

- 아일랜드는 지난 10년 동안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 국가들의 평균성장률보다 3배 이상 높은 경제성장을 이뤄냄
- 2000년에서 2004년에 걸친 평균 GDP 성장률을 인근 유럽국가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II-1〉 유럽각국들의 평균 GDP 성장률(2000~2004년)

(단위: %)

구 분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평균 GDP 성장률	5.2	3.0	2.5	1.6	0.9	0.8	0.7

자료: IDA(2006년 9월)

##### 외자유치 실적

- 아일랜드에서 외국기업의 직접 투자액은 2003년에 GDP의 17%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EU회원국의 평균치인 1.7%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임
- 1999년에서 2003년에 걸쳐 아일랜드의 GDP 대비 투자유치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II-2〉 아일랜드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단위: 십억유로,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GDP	89.6	102.8	114.7	129.3	134.8
투자유치액	17.4	28.7	17.5	20.2	22.9
투자유치액/GDP	19	28	15	16	17

자료: 아일랜드 중앙통계국

 중점 투자유치 대상 업종

- 고부가가치, 고성장, 지식산업에 외국인투자를 집중 유치하고 있음
  - 금속 및 엔지니어링, 금융서비스 및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텔레서비스와 같은 국제서비스, 제약, 의료보건사업이 주요 업종이고 자동차공장 등 낮은 노임에만 의존하는 업종은 투자유치 대상 분야가 아님
- 금융분야는 런던이나 프랑크푸르트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소매금융이 아닌 신규 유망업종으로서 Treasury Financing, Mutual Fund, 재보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아일랜드의 산업분야별 외자법인 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II-3〉 아일랜드의 산업별 외자법인 분포

(단위: 개)

산업분야	1992	1995	1999	2000	2001
금속 및 엔지니어링	323	345	365	362	345
금융서비스	125	174	387	363	344
국제 서비스	123	163	262	288	289
제약	113	120	133	133	130
기타	176	166	143	141	129
합 계	860	968	1,290	1,287	1,237

자료: IDA(2001년도 말 기준)

□ 금융부문 경제적 성과

- 더블린은 세계적인 금융기관 유치에 성공해 국제금융서비스센터로 부상함
  - 세계 2위의 펀드관리 및 자산보관센터(custody center)
  - 세계 50대 은행, 세계 20대 보험회사의 절반 이상이 더블린에 진출
  - 2004년말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전 세계 443개의 금융기관을 수용
  - IFSC에 근무하는 총 고용인원은 2만 여명으로 특히 아일랜드 금융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펀드 매니지먼트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은 8천 여명에 달함

나. 외자유치 성공요인

□ 외자유치 전담기관 IDA(Industrial & Development Agency)

- 정부는 기업통상고용부 산하에 ‘산업개발청(IDA: Industrial & Development Agency)’을 설립하여 외국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신속하고 철저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투자 유망 분야 선정 및 투자 환경 홍보
  - 공장 입지 선정 및 각종 행정 지원(주택, 자녀학교 선정 등)
  - 근로자 훈련, 합작 및 기술 이전 지원, 자문 서비스 제공
  - 외자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등

□ 외자유치 특별구역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 Center (IFSC)

- 아일랜드는 더블린을 세계적인 금융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취지하에 1987년 국제금융센터(IFSC: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 Center)를 설립하고 외국 금융회사의 아일랜드 진출을 지원
-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부여
  - IFSC에 입주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10%의 법인세 적용(2003.1.1부터는 12.5%)
- IFSC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금융기업들에 대해 금융감독원(IFSRA: Irish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uthority)에 의한 규제를 최소한으로 제한

□ 세제상 인센티브

- 2002년까지 IFSC에 입주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10%의 감면세율 혜택 부여
- 아일랜드 내 법인소득세율은 12.5%로 이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외자의 성공적 유치 및 고속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음<sup>1)</sup>
- 2004년 ‘금융법’(Finance Act 2004)을 도입하여 외자기업이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지출할 경우 동 지출액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 보조금

- 아일랜드 내 외자기업에 대해 주어지는 보조금 혜택은 다음과 같음

〈표 II-4〉 아일랜드 내 외자기업에 대한 혜택

지원항목	지원 내용
자본보조금 및 임대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에 사용될 설비, 공장, 건물, 토지 등의 구입을 지원해주는 보조금</li> <li>• 보조금의 수준은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나 대략 25~35% 사이</li> </ul>
고용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에 투자하여 항구적인 고용을 창출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li> <li>• 보조금 수준은 1명당 1,250~12,500유로 사이</li> </ul>
교육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산업으로서 종업원 교육이 필요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li> <li>• 일반적으로 종업원 교육기간 동안 지급되는 모든 급여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며 관련 여행경비, 경영자 교육 또는 강사료에 대해서도 지급됨</li> </ul>
R & D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라인이나 제조방법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li> <li>• 제조공정의 개선, 신제품의 개발, 기존제품의 디자인 개발 등이 이에 해당</li> <li>• 보조금 수준은 회사규모, 회사의 소재지에 따라 다양하나 최대 160만유로 한도 내에서 총 비용의 50%까지 지급</li> </ul>

1) 법인세율 비교 (Source: Deloitte & Touche Sept. 2006.)

아일랜드(12.5%), 영국(30%), 벨기에(33.99%), 프랑스(34.43%), 네덜란드(29.6%), 스페인(35%), 오스트리아(25%), 독일(38.6%), 체코(26%), 폴란드(19%), 리투아니아(15%), 헝가리(16%), 룩셈부르크(22%), 포르투갈(25%), 슬로베니아(25%), 에스토니아(24%), 스웨덴(28%), 핀란드(26%), 슬로바키아(19%), 덴마크(30%), 이탈리아(33%), 그리스(32%)

□ 기타 성공요인

- 영어를 사용하는 젊고 숙련된 노동력(25세 이하 인구가 인구의 40%에 달하는 인구분포)
-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사회연대협약을 통한 산업 평화
- 기업친화적인 경제정책의 일관성
- 고부가가치 및 하이테크 산업(전자, 제약, 무역서비스, 금융)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역량을 집중
- 유럽과 미국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
- EU시장에 대한 접근성
-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와 높은 수준의 통신 인프라

## 2. 소득과세제도

### 가. 소득세제도 개관

#### 1) 법인소득세

- 아일랜드는 1981년 외국인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해 제조업체 및 경제특구지역에 10% 세율제도를 도입하면서 외자유치를 통한 성장에 성공
- 1981년 일반적인 법인세율 47%보다 낮은 10%를 특구구역 및 제조업체에 적용
    - 10% 세율 적용대상은 넓은 의미의 제조업체<sup>2)</sup>, 외자유치 특별구역인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 Center(IFSC) 입주 기업, Shannon Free Zone 입주기업 등임

---

2) 적용대상은 아일랜드 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 일반적인 제조업 이외 다음의 기업들도 포함. 즉 EU 이외 외국의 Engineering work와 관련하여 아일랜드에서 서비스하는 전문서비스기업, 소프터웨어개발을 포함한 컴퓨터서비스, 양식업, 항공기 수리 및 관리, 필름생산(75% 이상 국내생산), 신문생산 등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며 소매업, 빌딩업, 광업, 임대업은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낮은 법인세율 문제는 EU 차원의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 방지대책을 야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9년 새로운 법인세율 제도에 EU와 합의하고 시행하였음
  - 일반적 법인세율은 1981년 47%에서 43%(1991), 40%(1993), 36%(1997), 32%(1998)로 인하되었으며 이후 2003년 12.5%로 단계적으로 인하
    - 1999년: 28%, 2000년: 24%, 2001년: 20%, 2002년: 16%
  - 특별구역 입주기업 등 기존의 10% 낮은 세율 적용기업(1998년 이전 입주기업)은 2010년까지 10%세율을 적용
- 즉 2010년 이후에는 모든 기업에 12.5%의 단일 법인세율이 적용

□ 거주자

- 아일랜드 거주자인 법인의 경우 전 세계 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며(s 21) 토지개발이익은 자본이득세로 과세됨(s 649A)

□ 비거주자

- 비거주자인 법인의 경우 아일랜드 내 지점이나 대리점이 없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s 25)
- 지점이나 대리점의 형태로 거래하는 경우 다음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
  - 지점 또는 대리점을 통해 발생한 소득
  - 토지, 광물권 및 아일랜드 내에서 지점 또는 대리점의 거래에 사용된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

□ 세율

- 아일랜드의 표준 법인세율은 12.5%이며 이는 국내외 모든 기업(제조업, 금융서비스업 등)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됨
- 아일랜드의 과세소득별 세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II-5〉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세율	과세소득
표준세율 (12.5%)	표준 법인세율은 12.5%로 고정(s 21).
높은세율(25%)	다음 형태의 소득(s 21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소득, 국외재산으로부터의 소득(Case III 소득)</li> <li>• 특허권, 잡이익(Case IV 소득)</li> <li>• 임대소득(Case V 소득)</li> <li>• 광업, 석유사업, 토지개발 사업으로부터의 소득</li> </ul>
특별세율(20%)	주거 토지의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s 644B)
특별세율(10%)	다음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10% 세율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8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제조업 및 국제서비스분야 외자기업</li> <li>• 1998년 7월 31일 이전에 세제감면혜택을 승인받은 제조업 및 국제서비스분야 외자기업</li> </ul>

## 2) 개인소득세

□ 아일랜드의 개인소득에 대한 거주자/비거주자별 과세 및 세율은 다음과 같음

### □ 거주자 판단

- 개인이 아일랜드에 한 해에 183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과거 2년 동안 총 280 일을 거주한 경우 과세목적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간주됨
  - 한 해 동안 30일 이내 거주한 경우 2년의 거주자 판정 테스트를 적용함에 있어 합산되지 않음(s 819)
  - 3년을 연속하여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4년째가 되는 해부터는 자동적으로 통상의 거주자(ordinarily resident)가 됨
  - 아일랜드에서 통상의 거주자인 개인이 3년 연속 비거주자일 경우 더 이상 통상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음(s 820)

□ 거주자/비거주자별 과세

○ 아일랜드에 주소를 둔 거주자

- 전 세계 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해 아일랜드에서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가 과세됨
- 아일랜드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나 통상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 과세목적상 주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로 간주됨

○ 아일랜드에 주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

- 국내 및 영국 원천소득 그리고 영국을 제외한 외국과의 계약에 따라 아일랜드 내에서 행해진 고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
- 국외 소득의 경우 아일랜드에서 수금하거나 아일랜드로 송금될 것을 전제로 함(s 71)
- 2006년 1월 1일부터 위 송금기준은 아일랜드에서 행해진 외국인 고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비거주자

- 아일랜드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아일랜드의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통상의 거주자일 경우 해당 연도에 EUR 3,810을 초과하는 국외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 해외에서 수행된 고용이나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음(s 821)

□ 세율

○ 소득세율은 20%와 41%의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양가족 여부 및 결혼 여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각기 다른 과세구간을 두고 있음

○ 기혼자의 경우 과세목적상 다음을 선택 가능

- 배우자와 합산 계산(s 1017, s 1018), 분리 계산(s 1023)
- 별도 계산(s 1016)

〈표 II-6〉 아일랜드의 소득세율

세율(%)	과세소득 범위(EUR)			
	독신 (부양 자녀 없음)	독신 (부양자녀 있음)	기혼 (맞벌이 아님)	기혼 (맞벌이 부부)
20%	0 ~ 34,000	0 ~ 38,000	0 ~ 43,000	0 ~ 43,000 <sup>1)</sup> (최대 68,000까지 증가)
41%	34,000 ~	38,000 ~	43,000 ~	43,000 ~

주: 1) 표준세율(20%) 구간은 EUR25,000과 더 낮은 소득을 가진 배우자의 소득금액 중 더 낮은 금액 만큼 증가될 수 있으며 동 증가금액은 배우자 간에 이전될 수 없음

## 나. 금융소득 과세제도

### 1) 이자소득

□ 아일랜드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 정부채권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등 이자소득 관련 조세혜택을 마련해 두고 있는 바, 이자소득 관련 구체적인 과세규정은 다음과 같음

#### □ 세율

- 법인의 예금이자는 일반적으로 소극적인 소득(passive income)인 Case III 및 Case IV의 소득으로 25%의 세율로 과세
- 그 밖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입증 부담이 매우 큼
- 다음의 특정한 경우에 발생한 이자는 Case I의 소득으로 12.5%의 세율로 과세됨

〈표 II-7〉 12.5%로 과세되는 이자소득

요 건	내 용
규제 자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일랜드 또는 국외 당국이 특정 수준의 영구자본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와 같은 규제 자본에 대해 투자하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Case I의 소득으로 과세될 것임</li> <li>• 규제 자본 요건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유동성을 반영하여 규제자본 요건액의 120%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Case I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li> </ul>
거래에 필수적인 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및 보험회사(생명과 비생명 및 재보험 포함)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의 경우 거래에 있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Case I의 소득으로 과세</li> </ul>

 원천징수 거주자

- 예금이자가 아일랜드 거주자인 개인에게 지급될 때에는 이자소득세가 20%의 표준세율로 원천징수됨
- 개인의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통상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고 기납부한 원천세액만큼은 공제받을 것임

 비거주자

- 비거주자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원천세가 과세되지 않음

 비과세

- 
- 특정 정부 채권 이자는 외자법인(지분율 90% 이상) 및 외국법인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해 비과세

## 2) 배당소득

- 
- 아일랜드는 비거주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구체적인 과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 거주자→거주자

- 아일랜드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이익을 분배할 때 표준 세율 20%로 원천징수하고 낸 금액을 지급해야 함(s 172B)
- 개인의 수입배당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통상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됨
  - 개인이 소유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기본세율 적용 배당에 대해서는 25/27, 10% 세율 적용대상 배당에 대하여는 1/18의 공제가 가능
  -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가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으며 원천징수세액이 주주의 조세채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환급됨

□ 거주자→비거주자

- 아일랜드 거주자인 법인이 비거주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아일랜드 법인은 표준소득세율 20%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다음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제외
  - 아일랜드와 이중과세조약을 맺은 국가 또는 유럽연합 국가의 거주자
  - 위의 지배를 받는 법인
  - 유럽연합이나 조약체결국가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법인

□ 비거주자→거주자

- 아일랜드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아일랜드에서 과세됨
- 다음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
  - 이중과세조약을 맺은 경우
  - EU 모/자회사령의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아일랜드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조항을 충족(일반적으로 5% 소유)하는 경우

□ 원천징수 제외

- 아일랜드 거주자인 법인
- 아일랜드와 이중과세조약을 맺은 국가 또는 유럽연합 국가의 거주자이거나 그

지배를 받는 법인

- 유럽연합 또는 조약체결국가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법인

### 3) 자본이득

□ 아일랜드는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바, 구체적인 자본이득 관련 과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과세대상

- 자산을 처분할 경우 자본이득세가 과세됨
  - 자산에는 옵션이나 채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비롯하여 어떤 형태의 자산이든 포함되고 처분에는 부분적인 처분 역시 포함됨
  - 자본이득세는 매 과세연도 증가하는 이득에서 자본손실을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에 대해 부과됨

#### □ 거주자/비거주자별 과세

- 거주자(통상의 거주자 포함)
  - 전 세계 자본이득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과세됨
- 아일랜드에 주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
  - 아일랜드 내 재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
  - 아일랜드 및 영국 밖에서 처분한 자산의 경우 수입금을 아일랜드로 송금하면 과세
- 비거주자
  - 다음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만 자본이득세가 과세됨
    - 아일랜드 내의 토지
    - 아일랜드 내의 광물 또는 광물채취권
    - 아일랜드 내 외국법인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영업에 사용하는 재산

□ 세율

- 1999년 12월 1일 이후 자본이득세율은 20%이나 다음에 대해서는 40%로 과세할 수 있음
  - 외국 생명보험증서 또는 외국 거치 연금계약의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
  - 비유럽연합의 비협약체약국에 위치한 해외펀드 이자의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

□ 원천징수

- 매도자가 비거주자이고 자산의 가치가 EUR 500,000을 초과하는 특정 거래일 경우 매입자는 대가의 15%를 자본이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주요 면제 및 경감항목

○ 면제항목

- 자본이득 중 첫 EUR 1,270은 매년 면제
- 내구력이 있는 동산(소모품 제외)의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금이 EUR 2,54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동 이익
- 공채에서 발생한 이익
- 연금 및 기금에서 발생한 이익
- 적금의 할증금, 경품채권 상금, 손해 및 손상에 대한 배상, 복권 및 도박 상금, 연금수혜권의 매각 이익
- 독립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이전지가 자녀의 주요 생활터전을 형성하고 그 시장가치가 EUR 254,000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함)

○ 경감항목

- 퇴직 경감 : 5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을 운영해온 가족회사의 주식, 농지나 사업을 처분할 경우
- 사업의 양도 : 사업을 양도하면서 양수회사의 주식과 교환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모든 자산을 이전한다면 미래 처분목적상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맞춰 경감될 것임

- 주거주지의 처분 : 주거주지를 처분할 경우 소유기간 중 마지막 12개월을 제외하고 소유기간 동안 거주했거나 거주했다고 간주될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이익은 면제

#### 4) 금융소득 과세제도 요약표

□ 금융소득 관련 거주자 및 비거주자별 과세방법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II-8〉 아일랜드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요약

소득구분	거 주 자	비 거 주 자
이자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의 예금이자는 25%의 세율로 과세</li> <li>개인에 대해서는 20%의 표준세율로 예납적 원천징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거주자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원천세가 과세되지 않음</li> </ul>
배당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에게 배당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li> <li>개인에게 배당하는 경우 표준세율 20%로 예납적 원천징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세율로 원천징수</li> <li>원천징수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거주자가 아일랜드와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 또는 유럽연합 국가의 거주자이거나 그 지배를 받는 경우</li> <li>- 유럽연합 또는 조약체결국가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법인인 경우</li> </ul> </li> </ul>
자본이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의 세율로 과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만 자본이득세가 과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일랜드 내의 토지</li> <li>- 아일랜드 내의 광물 또는 광물채취권</li> <li>- 아일랜드 내 외국법인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영업에 사용하는 재산</li> </ul> </li> </ul>

### 3. 국제투자소득 과세제도

#### 가. 해외투자국에서의 과세

- 해외에 소재한 자회사가 아일랜드에 소재한 모회사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 및 자국의 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것임
  - 아일랜드는 44개국<sup>3)</sup>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고 11개국<sup>4)</sup>과 동 협정을 추진 중에 있음
  - 조세조약에 의하면 비거주자에 지급하는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한 원천소득세의 경우 면제하거나 10% 또는 15% 정도만 부과하고 있음

#### 나. 아일랜드에서의 과세

##### 1) 외국납부세액공제

- 아일랜드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아일랜드에서 과세되며 해외투자국에서 과세된 경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외국납부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아일랜드의 거주자인 법인은 조세조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5% 이상 소유한 외

3) Australia, Austria, Belgium, Bulgaria, Canada, China, Croatia, Cyprus, the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ndia, Israel, Italy, Japan, Republic of Korea,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aysia, Mexico, the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akistan, Poland, Portugal, Romania, Russia, Slovak Republic,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weden, Switzerland,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Zambia

4) Argentina, Chile, Egypt, Kuwait, Malta, Morocco, Singapore, Tunisia, Turkey, Ukraine and Vietnam

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아일랜드에서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은 무한히 이월공제 가능함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유럽연합령 90/435/EEC에 의하면 유럽연합의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회원국의 거주자인 자회사가 납부한 세액 부분에 대해 아일랜드에서 법인세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음

□ 한도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공제 대상인 외국납부세액과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아일랜드의 법인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국외원천 소득의 개별 항목에 대해 별도로 계산됨
  - 단, 5%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한도 계산은 국외 배당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행해짐

□ 기타

- 자본이득을 비롯하여 기타 소득의 경우 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과세소득 계산시 비용으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함

2)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면세

□ 해외투자소득에 대해 면세되는 경우

- 외자법인이 지주회사로서 제3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 자회사 주식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세가 면제됨
  - 자본이득세가 면제되는 지주 회사의 지분율 요건은 5%임
  - 자본이득세 면제 혜택은 외자법인이 아일랜드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주요 동인이 되고 있음

## 4. 시사점

- 아일랜드가 금융허브로 발전하게 된 요인은 외국계 금융기업에 대한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기반으로 외자유치 전담기관(IDA) 및 국제금융센터(IFSC)를 두어 외국 금융회사의 아일랜드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임
- 특례법인세율 10%를 도입한 1981년 당시 총 세수입 중 법인세수의 비중은 5% 수준으로 세수감소의 부담이 적었음
- 1980년 세수입 중 총 국민부담 40.4억유로 중 법인세수는 1.8억유로로 전체부담의 4.5%수준에 불과하였음
  - 외국자본유치로 2003년 기준으로 법인세수는 51.6억유로 전체 부담 400.3억 유로의 12.9%로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총 국민부담 6.7조원 중 법인세수는 0.7조원으로 전체부담의 11.0% 수준이며 2003년에는 전체부담(183.7조원)의 15.3% 수준(28.1조원)으로 증가

〈표 II-9〉 법인세수의 비중

	아일랜드(백만유로)		우리나라(십억원)	
	1980	2003	1980	2003
총 국민부담(A)	4,046	40,025	6,687	183,667
법인세수(B)	184	5155	738	28,149
B/A	0.045	0.129	0.110	0.153

주: 총 국민부담은 조세부담에 사회보장기여금수입을 합한 것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5.

○ 조세적 측면

〈표 II-10〉 금융허브 발전에 기여한 조세정책적 요인

조 세 정 책
〈법인세율〉
표준 법인세율 12.5%(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
※ 국제금융센터에 입주하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해 2002년까지 10% 감면세율
〈금융소득 관련 조세혜택〉
1) 원천징수 제외
①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
② a) 아일랜드와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 또는 유럽연합 국가의 거주자 b) 그 지배를 받는 경우 c) 유럽연합 또는 조약체결국가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한 배당
2) 비과세
특정 정부 채권 이자는 외자법인(지분율 90% 이상) 및 외국법인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해 비과세
〈국제투자소득에 대한 조세혜택〉
1)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아일랜드 법인세법 ; 5% 이상 소유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 ② 유럽연합령 ; 유럽연합의 자회사로부터 배당받는 경우 자회사가 납부한 세액
2)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면세
외자법인이 지주회사로서 제3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 자회사 주식매각에 따른 자본 이득세 면제

○ 비조세적 측면

〈표 II-11〉 금융허브 발전에 기여한 비조세정책적 요인

Industrial & Development Agency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 Center	기타
정부 기업통상고용부 산하 외자유치 전담기관	외자유치 특별구역	유럽과 미국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 영어를 사용하는 젊고 숙련된 노동력
외자기업 투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입주 외국금융기관에 대해 10% 감면세율 (2003.1.1부터 12.5%)  금융감독원 규제 최소한으로 제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사회연대협약을 통한 산업평화 기업친화적인 경제정책의 일관성 고부가가치 및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역량을 집중

- 또한 아일랜드는 이와 같이 법인세 인하 등으로 외자유치에 성공하며 경제성장을 이뤄낸 결과 장기적으로 감세→경기부양→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

### III. 두바이(Dubai)

#### 1. 금융부문(Financial Sector) 현황

##### 가. 금융시장과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 두바이는 7개 국가의 연합체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nited Arab Emirate: UAE)의 하나로 2003년 기준으로 UAE의 GDP의 26%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융부문은 두바이의 GDP의 약10%를 차지하지만 UAE에 미치는 영향력은 46%에 해당함

〈표 III-1〉 두바이의 아랍에미리트 내 비중

(단위: Million AED)

부 문	UAE	두바이	UAE의 두바이 기여도
비금융부문	249,426	63,190	25%
금융부문	18,394	8,498	46%
정부서비스부문	29,272	6,905	24%
합계	293,121	76,458	26%
비석유부문	199,752	71,073	36%

주: 두바이상공회의소(Dubai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DCCI)의 2003 Survey에서 재인용; Belaid Rettab, "DCCI 2003 Survey; Structure & Performance of Dubai Major Economic Sectors,"

자료: Provisional data as being made available by the Ministry of Planning in May 2004

## 나. 금융시장 현황(은행, 보험, 주식시장)

### 1) 은행업

- UAE 중앙은행(Central Bank)으로부터 은행 면허를 획득한 내국은행(National Bank, Locally Incorporated Bank), 외국은행지점(Foreign Bank),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은 대부분 두바이에 본점과 지점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음

〈표 III-2〉 두바이의 은행 현황(2006년 9월)

(단위: 개)

구 분	본 점			지 점		
	UAE	두바이	집중도	UAE	두바이	집중도
내국은행	21	9	43%	496	266	54%
외국은행지점	25	17	68%	119	97	82%
투자은행	2	2	100%	N/A	N/A	-

주: UAE 중앙은행에서 고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자료: UAE 중앙은행 홈페이지; <http://www.centralbank.ae/bsed/licences.php> 접속일 2007년 5월 17일

### 2) 보험업

- 두바이의 보험업의 경우 2003년 기준으로 UAE에 261개의 회사 중 두바이에 129개(외국회사 22개 포함)의 회사가 보험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는 1998년부터 5년간 18.3%의 비율로 증가한 것임<sup>5)</sup>

### 3) 주식시장

- UAE의 주식시장은 증권거래법(1999년)의 시행 이후 아부다비증권시장(Abu

---

5) The Financial Sector In Dubai, Part III, p42. <http://www.tradeindubai.ae/Tradedev/gn/ResearchStudies/studies.htm?o=.%2fTradedev%2fgn%2fResearchStudies>

Dhabi Securities Market: ADSM)과 두바이증권시장(Dubai Financial Market: DFM)이 설립되어(2000년) 상장기업의 증가와 거래의 활성화로 2005년까지 각각 343%와 1,238%의 성장률<sup>6)</sup>을 보이고 있으며, 그 성장의 원인은 높은 유동성과 강한 거시경제 성장률, 낮은 이자율과 상장기업의 이익 극대화임<sup>7)</sup>

〈표 III-3〉 DFM 상장기업 수 추이

(단위: 개, %)

부문/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은행(Banking)	2	4	4	5	7	22
산업(Industry)	1	1	1	1	1	5
보험(Insurance)	-	-	1	2	9	12
투자(Investment)	1	2	2	4	4	13
서비스(Service)	2	2	2	4	7	17
합계	6	9	10	16	28	69
성장률	-	50	11	60	75	-

자료: Table 3, Working Paper No.05-01 October 2005

〈표 III-4〉 DFM의 거래량 구성(2005년)

(단위 : 1천주)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거래량(Trading Voume)	3,277,102	6,515,553	8,179,645	7,569,402
은행(Banking)	34,460	69,560	730,004	298,101
산업(Industry)	-	-	-	142
보험(Insurance)	9,246	12,626	90,881	1,119,287
투자(Investment)	2,741,008	5,546,821	6,602,110	5,638,790
서비스(Service)	492,388	886,546	756,650	513,082

자료: Dubai Financial Market; <http://www.dubaied.gov.ae/main/gn/DubaiEconomy/QuarterlyIndicators.htm?o=/main/gn/DubaiEconomy>, 접속일 2007년 5월 16일

6) Jay Squalli, "Are the UAE Financial Markets Efficient?," Working Paper No.05-01 October 2005, p. 4~5.

7) IMF, "United Arab Emirates: 2006 Article IV Consultation," Country Report No.06/257, p11.

〈표 III-5〉 DFM의 거래액 구성(2005년)

(단위: 1천AED)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거래금액(Trading Value)	38,098,599	127,398,014	140,734,516	98,855,212
은행(Banking)	3,260,130	10,982,940	24,003,729	10,015,495
산업(Industry)	-	-	-	3,879
보험(Insurance)	89,720	580,849	853,191	8,036,752
투자(Investment)	29,671,073	101,400,407	102,053,897	69,527,092
서비스(Service)	5,077,676	14,433,818	13,823,699	11,271,994

자료: Dubai Financial Market

#### 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DIFC)

- UAE는 탈오일산업화 목적으로 특정자유지역(freezone)을 산업분야별로 집중 개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금융업의 특정자유지역이 DIFC로서 2004년 관련법 통과 후 설립되었고 2005년 9월에 DIFC 내에 두바이 국제금융시장(Dubai International Finance Exchange)이 개장<sup>8)</sup>되었음
- DIFC에서는 UAE의 형법만 적용될 뿐 독립된 사법기관의 운용 및 민법과 상법의 제정<sup>9)</sup>으로 독립된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 OFC)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혜택<sup>10)</sup>을 부여하고 있음
  -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 인정
  - 50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면제
  - 외환 및 과실송금에 대한 무제한 허용
  - 거래통화는 자국통화(AED) 대신 USD를 채택

8) DIFX, "Guide to the DIFX," <http://www.difx.ae/about/>, DIFX의 금융상품은 기업상장(Initial Public Offerings: IPO)과 지분증권, 채권, 펀드, 지수상품(index products), 워런트, 파생상품 등임.

9) IMF, "United Arab Emirates: 2006 Article IV Consultation," Country Report No.06/257, p. 41

10) [http://online2.ibfd.org/data/me/Country\\_Analyses/me\\_ae\\_0018.html](http://online2.ibfd.org/data/me/Country_Analyses/me_ae_0018.html)과 「매일경제」 2006년 5월 10일자 보도자료

- 중동의 휴무일(목·금)에 시장을 운영하여 국제기준의 근무일(토·일 휴무) 조정
- 자본시장의 개장시장을 런던증시의 거래시간과 통일
- DIFC의 가능한 금융업은 은행업, 자본시장(주식, 채권, 파생상품거래), 자산운용업, 재보험업, 이슬람금융(Islamic finance)과 연락사무소의 운영이며, 이러한 업무를 위해 DIFC의 총재(president)는 3개의 독립된 기관을 설립 운영함
  - 두바이 금융감독청(Dubai Financial Service Authority: DFSA)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원(DIFC Authority)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사법관할청(DIFC Judicial Authority)
- 2006년 2월 현재 DIFC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외국회사 160개와 40개의 금융기관이 있으며, DIFC의 은행업무의 제약은 소매금융(retail banking), AED 예금 유치와 대여 및 환전 업무임<sup>11)</sup>

## 2. 소득과세제도

### 가. 법인세

- UAE에서 설립된 모든 법인 또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점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며, 내외국인 간 차별이 없으나 사실상 석유회사(Oil company)와 외국은행만이 납세의무자가 됨
- 두바이의 석유회사가 부담하는 법인세는 광물사업소득에 5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 됨
- 두바이 외국은행의 과세표준은 금융사업소득이며 이에 대한 법인세율은 20%임
- 외국은행의 금융사업소득의 산정 절차는 1996년 제정된 법2(Regulation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1) IMF, "United Arab Emirates: 2006 Article IV Consultation," Country Report No.06/257, p. 42

- 본점에 송금한 비용을 지점의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려면 본점의 외부감사인의 확인과 지점의 장부와 증빙이 갖추어져야 함
- 공제가능한 지역경영관리비(regional management expenses)는 각 본·지점별 자산총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함
- 본점송금비용과 지역경영관리비의 합계금액이 지점의 총 수입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에서 초과금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 이월공제는 2년간 가능하나 소급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 금융업의 특정자유지역인 DIFC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법인세가 면제됨

#### 나. 소득세와 원천징수세제

- UAE에서는 개인에게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UAE에서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조세규정이 없음

#### 다. 금융소득세제

- UAE에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지 않음<sup>12)</sup>

### 3. 국제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 가. 해외소득면제

- UAE 국내세법에 의하면 UAE의 영토 안에서 발생하거나 고정사업장(PE)을 통하

---

12) <http://www.us.kpmg.com/microsite/FSLibraryDotCom/docs/Financial%20Services%2006.pdf>

여 발생된 소득이 UAE의 과세대상소득이 되어,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과세되지 아니함<sup>13)</sup>)

#### 나. 조세조약

- UAE는 현재 27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조세조약의 체결로 UAE의 거주자는 해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제한세율<sup>14)</sup>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됨
  - 면세의 제한(Limitation on benefits)  
거주자가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조약의 내용으로 UAE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일부가 면세의 제한 규정을 채택하고 있음
  - 조세조약의 의한 이중과세방지(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UAE의 국내세법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대부분 UAE의 조세조약에는 UAE에서 부과된 조세를 한도로 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음
    - 이러한 규정이 있어도 UAE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큰 의미가 없음

#### 다. 역외금융센터(OFC)와 조세피난처

- 역외금융센터의 특징은 (1) 금융거래 전반의 법률상 또는 관행상의 제약이 거의 없고, (2) 조세상의 우대혜택을 제공하면서 거래비용이 낮으며, (3) 정치적 ·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4) 국제 금융시장과 정보교환시스템이 결합된 형태로 항공

13) IBFD의 UAE의 이중과세조정에 대한 설명에서 다음의 내용을 번역한 것임 “Generally, taxable income only includes income of a chargeable person arising in the UAE and derived from carrying on trade or busines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fore, generally income arising overseas would not be included in taxable income.”

14) 일반적으로 원천국가의 세율보다 낮음

로가 확보되어 있고, (5) 고객의 기밀을 유지하고 (6) 영어 사용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조세피난처의 특징과 거의 일치함<sup>15)</sup>

- 두바이의 DIFC와 제반사항은 역외금융센터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음

## 4. 시사점

### 가. 재정측면

- 아랍에미리트의 재정수입은 석유회사와 외국은행 지점의 사업소득에 부과되는 범인세에 한정되어 있어 외자기업 법인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부담이 약함
  - 오히려 금융허브를 통해 기존 조세수입보다는 정부 소유의 항공사, 정유사, 부동산개발회사의 수입 증대효과를 기대
  - 금융업 활성화를 위해 특정지구의 경우 외국 금융업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를 면제
- 특정산업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인 두바이(Dubai)는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incentives)을 제시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조세를 부과하는 정부의 역할보다 기업(enterprise)의 수입(Business income)을 창출하는 역할에 더 부합됨

### 나. 금융허브로의 발전 요소

- 조세 이외의 측면에서의 발전 요소는 국제자본을 운용하는 투자자의 선호(preference)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금융자유지역인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

15) 안종석 · 최준욱, 『국제조세 회피의 행태 및 경제적 효과분석』 2003, p. 32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와 같은 산업환경을 조성한 데 있음

〈표 III-6〉 금융허브로의 발전 요소

투자자의 선호	⇒	두바이국제금융센터
금융거래 법률상의 낮은 제약		외환 과실송금 무제한 허용
금융업무 환경의 높은 친숙도		외국인 소유지분 100% 인정
낮은 거래비용		독립된 민법 · 상법 제정
접근 용이성(교통의 발달) <sup>1)</sup>		거래통화 USD/영어 사용/업무일 조정 금융시장의 업무시간을 런던시장과 통일

주: 1) 두바이의 항공사업과 관련된 경제자유지역(Dubai Airport free zone)을 건설하여 항공산업의 발전을 가져옴.

- 조세 측면에서는 투자자에게 두바이(Dubai)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해외소득면제방식의 적용과 역외금융센터의 존재로 인하여 조세피난처와 거의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다. 기타 고려사항

-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가 역외금융센터이고, 두바이(Dubai)의 세부담이 거의 없는 경우 사실상 조세피난처(tax haven)에 해당되어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조세회피 및 탈세의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sup>16)</sup>
  - 역외금융센터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금융자회사를 통한 조세회피의 성격을 가지며, 조세피난처 등에 설립된 복수의 자회사 중 일부(사실상 서류상의 회사로서 기장센터의 역할)가 역외금융센터에 설립되고 실질적인 역외금융거래는 금융중심지에 설립된 금융센터에서 수행될 가능성 존재

16) 안종석 · 최준우, 『국제조세 회피의 행태 및 경제적 효과분석』 2003, p.30

## IV. 싱가포르

### 1. 금융부문 현황

#### 가. 국제금융센터

-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금융센터<sup>17)</sup>
  - 동경, 홍콩과 더불어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금융센터에 해당
    - 런던 · 뉴욕 등이 거의 모든 금융 분야에 걸쳐 전 세계를 지역적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 국제금융센터(Global Financial Center)인 데 반해 주로 아시아 지역에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음
  - Asian Dollar Market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은행업과 외환거래 부문은 홍콩보다 앞서고 있지만, 협소한 국내 경제 때문에 발달이 늦어 자본시장 부문은 홍콩보다 뒤짐
- 싱가포르투자청과 테마섹<sup>18)</sup>
  - 싱가포르 정부의 잉여자금은 싱가포르통화청과 싱가포르투자청, 그리고 테마섹이 분담해서 운용하고 있음

17) 「홍콩 및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과정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제165호, 2003.11.

18) 「싱가포르의 금융산업 관련 발전전략이 주는 시사점」, 주간 『금융브리프』 16-11, 한국금융연구원, 2007.3.12.

〈표 IV-1〉 싱가포르정부 잉여자금의 운용

구 분	개괄적인 운용금액	주 운용자산
싱가포르통화청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590억달러(12.4%)	단기 금융자산
싱가포르투자청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	1,190억달러(25.1%)	중기 투자자산
테마섹(Temasek Holdings)	2,970억달러(62.5%)	장기 투자자산

- 테마섹은 싱가포르 정부잉여금의 약 62.5%를 운영하는 투자기관으로 설립 이후 연 18%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무부에 매년 7% 이상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여 오고 있음
  -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싱가포르개발은행을 통해 직접적인 해외진출에 나서고 있음<sup>19)</sup>
  - 또한 금융부문 자회사인 아시아금융지주회사(Asia Financial Holdings)를 통해 아시아 주요 전략국가의 핵심 은행에 지분투자를 함으로써 아시아 지역 내 최강 글로벌 금융네트워크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sup>20)</sup>
- 2004년부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테마섹과 달리 싱가포르투자청은 아직까지 투자자산 구성과 투자실적을 공개한 적이 없음
- 이들 기관은 싱가포르 금융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유치, 고도의 금융지식을 갖춘 인력의 배출·훈련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부의 보존 및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나. 금융시장과 국내총생산(GDP)

- 2006년 명목 GDP를 기준으로 금융업은 싱가포르 국내총생산의 11.5%를 차지하고 있음

19) 아시아 12개국에 걸친 해외영업 비중이 45%에 달함

20) 2006년 3월 팬 아시아의 대표적인 은행에 해당하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을 인수하였으며, 말레이시아 쿠톡푸아트 은행 지분 11.5%를 인수하여 동 은행의 최대주주가 됨

〈표 IV-2〉 싱가포르 GDP의 구성(2006년)

(단위: %)

부 문	명목 GDP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
제조업	27.7
금융서비스	11.2
사업서비스	11.5
건설	3.6
수송·보관	9.6
정보통신	3.8
도소매	15.2
호텔·음식점	1.9

자료: 싱가포르통화청(MAS),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in Singapore,” 2007년 3월

#### 다. 금융부문 현황<sup>21)</sup>

##### □ 싱가포르 주요 금융기관 현황

- 2006년 3월말 현재 108개의 은행, 3개의 금융회사, 48개의 종합금융회사가 상업은행 및 투자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고, 144개의 보험회사, 72개의 증권회사, 38개의 선물회사, 92개의 자산관리회사가 보험 및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음

##### □ 은행업

- 2006년 3월말 현재 싱가포르에는 103개의 외국계 은행이 설립되어 있고, 국제금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에 설치된 Asian Currency Unit<sup>22)</sup>의 수 역시 151개에 달함
- 2004년 9월말 현재 싱가포르 소재 외국계 은행의 수를 주요 국제금융센터와 비

21) 「홍콩 및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과정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제165호, 2003.11.

22)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아시안달러의 수취 및 대출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을 말한다. 아시안달러거래는 싱가포르 소재 은행의 ACU계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한 거래는 정부의 외환규제를 받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거래구분은 국내금융시장과 국제 자본시장의 병행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국제금융시장을 육성하려는 데 있다.

교해본 결과 런던, 홍콩, 뉴욕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함

〈표 IV-3〉 주요 금융기관 현황

(단위: 개)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은행	117	115	111	108
국내은행	5	5	5	5
외국은행	112	110	106	103
Asian Currency Unit	164	160	153	151
은행	112	110	106	104
종합금융회사	52	50	47	47
금융회사	5	3	3	3
종합금융회사	53	51	48	48
보험회사	143	139	140	144
증권회사	59	60	65	72
선물회사	36	31	34	38
자산관리회사	90	94	91	92
보험증개회사	57	60	61	63
국제적인 금융 중개인	8	8	10	9
허가받은 금융자문기관	49	52	56	61
기업금융자문	22	26	30	33
차입외환거래	11	10	11	13
증권금융회사	13	13	15	16
보호증권계좌서비스	26	26	27	31

자료: 싱가포르통화청(MAS), "Annual Report," 2006년

〈표 IV-4〉 주요 금융허브의 외국계 은행 현황(2004년 9월 기준)

(단위: 개)

런던	홍콩	뉴욕	싱가포르	프랑크푸르트	동경
155	149	129	106	95	72

자료: 싱가포르통화청(MAS)

- 2006년 9월말 현재 싱가포르 소재 은행의 대외자산 · 부채 규모는 각각 5,830억 달러와 5,870억 달러로서 총대외거래 규모 기준으로 세계 12위에 해당함

〈표 IV-5〉 주요 금융허브 내 은행의 자산구성

(단위: 10억USD)

	대외자산	대외부채	합계	순위
영국	4,971	5,240	10,211	1
미국	2,184	2,706	4,890	2
독일	2,588	1,673	4,261	3
일본	1,846	700	2,545	6
싱가포르	583	587	1,170	12
홍콩	581	339	920	14

자료: BIS, "BIS Quarterly Review," 2007년 3월

- 2006년 9월말 현재 싱가포르 소재 은행의 여수신 규모는 각각 5,550억달러와 5,220억달러로서 세계 12위에 해당함

〈표 IV-6〉 주요 금융허브의 은행 여수신 규모

(단위: 10억USD)

	대외여신	대외수신	합계	순위
영국	3,871	4,480	8,351	1
미국	2,173	2,621	4,793	2
독일	1,764	1,294	3,057	3
일본	642	677	1,319	8
싱가포르	555	522	1,077	12
홍콩	413	319	732	14

자료: BIS, "BIS Quarterly Review," 2007년 3월

외환거래

- 2004년 4월의 하루평균 외환거래액을 주요 국제금융센터와 비교해본 결과 영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함

〈표 IV-7〉 주요 금융허브의 외환거래 규모

(단위: 100만USD)

영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독일	홍콩
753	461	199	125	118	102

자료: BIS, "Technical Central Bank Survey(Foreign exchange and derivatives market activity in 2004)," 2005년 3월

□ 주식시장

- 2005년 말 기준 싱가포르 증시의 시가총액은 뉴욕증시의 2%, 동경증시의 6%, 런던증시의 8%에 불과하며, 홍콩 증시에 비해서도 약 1/4에 불과함
- 2005년 중 싱가포르 증시의 주식거래액은 뉴욕증시의 1%, 동경증시의 3%, 런던 증시의 2%에 불과하며, 홍콩 증시에 비해서도 약 1/4에 불과함
- 2005년 말 기준 싱가포르 증시의 상장회사 수는 홍콩 증시의 60%에 불과하나, 외국계 상장회사 수는 122개로 홍콩보다 크게 앞서 있음

〈표 IV-8〉 주요 금융허브의 주식시장

(단위: 10억USD, 개)

	2005년 말 시가총액	2005년 중 주식거래액	2005년 말 상장회사 수
뉴욕	13,311	14,125	2,270(452)
동경	4,573	4,482	2,351(28)
런던	3,058	5,678	3,091(334)
프랑크푸르트	1,221	1,915	764(116)
홍콩	1,055	464	1,135(9)
싱가포르	257	116	686(122)

주: 팔호 안은 외국계 상장회사 수임

자료: BIS, "Annual Report," 2005년

□ 채권시장

- 2006년 말 기준 싱가포르의 국제채권 발행 잔액은 홍콩과 유사한 수준이나, 미국이나 독일, 영국과 같은 선진국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IV-9〉 주요 금융허브의 채권시장

(단위: 10억USD)

	단기증권	채 권	합 계
미국	81.2	2,235	2,316.2
독일	59.3	1,802	1,861.3
영국	264.7	3,959	4,223.7
일본	1.5	150.7	152.2
홍콩	2.2	47	49.2
싱가포르	4.0	44	48

자료: BIS, "BIS Quarterly Review," 2007년 3월

## 2. 소득과세제도

〈표 IV-10〉 싱가포르의 소득과세제도

항목	주 요 내 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세: 소득세</li> <li>○ 간접세: 부가가치세, 수입관세(일부 항목에 합침), 재산세, 인지세, 부동산세 등</li> </ul>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20%(2008 과세연도부터 18%)</li> <li>○ 개인: 0~20% 7단계 누진세율</li> </ul>
금융소득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에서 열거한 일정한 이자소득(장관이 싱가포르의 경제·기술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대출금 이자 등)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됨</li> <li>-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 대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거된 비과세증권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의 50%를 세액공제함</li> </ul> </li> <li>- 이자 수령자가 거주자이면 원천징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비거주자이면 원천징수(세율 15%)에 의해 과세가 종결됨</li> </ul> </li> <li>○ 배당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기업이 지급하는 배당: 2008년 1월 1일부터 One-Tier시스템이 시행되면 모든 수준의 주주 입장에서 세금이 면제됨</li> <li>- 싱가포르에 송금된 해외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주주 입장에서 과세되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함.</li> <li>• 그러나 개인이 수취한 해외배당, 비개인거주자가 수취하는 것으로서 송금되는 국가의 최고 법인세율이 15% 이상이고, 그 국가에서 이미 과세가 이루어진 해외배당은 과세되지 않음</li> </ul> </li> </ul> </li> <li>○ 자본이득: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음</li> </ul>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 면제: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금융업의 일정한 역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됨</li> <li>○ 세율 감면: ACU역외소득, 증권거래, 펀드관리, 역외리스크의 보험·재보험, 선물거래 등에 대해서는 10%(대규모 거래의 경우에는 5%)의 세율을 적용함</li> <li>○ R&amp;D지원: 새로운 금융활동을 개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최대 5년 동안 이중의 소득공제가 가능함</li> <li>○ 운영총괄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한 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5~10년 동안 경영수수료, Headquarter 관련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이자 및 로열티에 대해 10%의 감면세율 적용, 배당소득에 대해 10년 동안 세금면제</li> </ul> </li> </ul>

## 가. 조세제도 개요

### □ 직접세

- 소득세가 유일하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 간접세

- 1994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음
- 수출관세는 없고, 수입관세는 일정한 항목에 한해 부과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재산세, 인지세, 부동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음

## 나. 소득세 세율

### □ 법인

- 거주자
  - 20%(2008과세연도부터 18%)
  - 다만, 금융업의 특정한 역외소득, 경제획장인센티브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이 적용됨
- 비거주자
  - 거주자와 동일함
  - 다만,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얻은 로열티, 이자, 동산임대료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10%(로열티) 또는 15%(이자, 동산임대료)에 상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됨

### □ 개인

- 거주자: 누진세율 적용

〈표 IV-11〉 개인소득세 과세구간 및 세율

과세소득(단위: SGD)	한계세율(단위: %)
~20,000	0
20,000~30,000	3.5
30,000~40,000	5.5
40,000~80,000	8.5
80,000~160,000	14
160,000~320,000	17
~320,000	20

## ○ 비거주자

〈표 IV-12〉 비거주자 소득과세제도

구 분	과 세 소 득
비거주자 종업원(비상근이사 제외)의 근로소득	둘 중 큰 금액 - 인적공제 없이 15% 단일세율 적용 - 인적공제 고려 후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적용
비거주자 파트너, 비상근이사, 전문가, 개인사업자	인적공제 없이 20% 세율 적용
비거주자 공익 예술가	인적공제 고려 후 순이익에 대해 15% 세율 적용
기타소득	20% 세율 적용(다만,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얻은 로열티, 이자, 동산임대료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10% 또는 15%에 상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 종결)

## 다. 금융소득 과세

## 1) 이자소득

## □ 개요

- 은행이나 자금대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조 1(a)에 따라 과세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조 1(b)에 따라 과세함

□ 소득의 원천

-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싱가포르 원천소득으로 간주함(소득세법 제12조 제6항)
  -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고정사업장이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이자 (싱가포르 밖의 고정사업장이나 동산을 통해 싱가포르 밖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 있는 경우 제외)
  - 싱가포르에서 발생하거나 얻은 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자
- 대출수수료, 대출과 관련하여 알선·관리·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역시 이자와 동일하게 취급함
  - 다만, 싱가포르 국외의 자가 싱가포르 거주자 또는 고정사업장을 위해 싱가포르 국외에서 알선·관리·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정상가격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싱가포르 원천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
- 싱가포르 거주자가 수취한 이자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대출약정이 싱가포르에서 실행되었거나 대여자가 싱가포르에서 대출금을 차용자에게 넘겼다면 싱가포르 원천소득으로 간주함
  - 이자지급자의 장소는 이자의 원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과세소득: 거주자 vs. 비거주자

〈표 IV-13〉 싱가포르의 기업과세제도

납세의무자	과세소득의 범위
거주자	싱가포르 원천이자소득과 싱가포르에서 수취한 국외원천이자소득
싱가포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는 비거주자기업	싱가포르 원천이자소득과 고정사업장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싱가포르에서 수취한 국외원천이자소득
일시적인 거주자, 비거주자 개인, 싱가포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기업	싱가포르 원천이자소득(국외원천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서 수취하였든지 그렇지 않던 간에 과세하지 않음)

□ 비과세소득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령자 입장에서 세금이 면제됨
  - 비거주자 개인이 갖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승인받은 은행의 예금이자
  - 싱가포르에서(자기 자신 또는 다른 자와 함께)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싱가포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개인 및 개인을 제외한 자가 갖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승인받은 은행의 예금이자
  - 이자의 수령자가 비거주자 개인 또는 싱가포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자에 해당하는 승인받은 아시아달러채권 이자
  -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취한 우체국예금이자(예금총액 SGD 100,000까지)
  - 장관이 싱가포르의 경제 · 기술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대출금 이자<sup>23)</sup>로서 다음과 같은 제목하에 공시되고 있는 것
    - 정부차관 · 등록주식 이자
    - 싱가포르 국외에서 조달된 정부차관 이자
    - 회사채 이자
    - 경제 · 기술발전대출금 이자
    - 경제 · 기술발전대출금의 할인에서 얻은 이자
    - 경제 · 기술발전 촉진을 위한 이자
  - 개인이 2005년 1월 1일 이후 승인받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표준적인 저축 예금, 유동 · 고정예금계정에서 얻은 이자
  - 다만,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수취하는 납세의무자(금융기관)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세액공제

-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수취하는 납세의무자(은행 또는 금융기관)는 비과세 규정 대신 부분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3) 이 규정은 주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적용됨

- 일반적으로 ‘47조에 의한 세액공제’라고 부름
- 위에 열거된 비과세 증권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세금의 50%를 공제 가능함
  - 다만, 과세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원천징수

〈표 IV-14〉 원천징수제도

이자 수령자	원 천 징 수
거주자	원천징수세가 과세되지 않음
비거주자	(원칙) 완납적 원천징수(세율 15%)에 의해 과세가 종결됨 (예외) 다음의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가 과세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은행 · 지점에게 은행 · 지점 간에 지급하는 이자</li> <li>- 1999년 2월 27일부터 2003년 2월 27일 사이에 발행된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에서 얻은 이자</li> </ul>

2) 배당소득

□ 개요

- 비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조 1(d)에 따라 과세함
- 그러나 One-Tier시스템<sup>24)</sup> 하에서는 거주자가 지급하는 모든 배당에 대해 모든 수준의 주주 입장에서 세금이 면제됨

□ 소득의 원천

- 거주자 기업이 지급하거나 분배한 배당은 싱가포르 원천소득으로 간주함

---

24)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나, 5년간의 이행기간(2003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동안에는 기업의 선택에 의해 예전의 imputation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 그러나 2008년 1월 1일부터 모든 기업이 one-tier시스템으로 이행해야 한다.

과세소득

- One-Tier System

〈표 IV-15〉 배당관련 과세제도

구 분	주주에 대한 과세
싱가포르 배당	주주 입장에서 과세되지 않음
싱가포르에 송금된 해외배당	<p>1) 원칙: 주주 입장에서 과세되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도 25% 이상 보유하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함</li> </ul> <p>2) 예외: 다음과 같은 해외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이 수취한 해외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 · 비거주자 모두 포함, 싱가포르에서 파트너십을 통해 소득을 수취하는 개인거주자 제외</li> </ul> </li> <li>- 비개인 거주자가 수취하는 것으로서 송금되는 국가의 최고 법인세율이 15% 이상이고, 그 국가에서 이미 과세가 이루어진 해외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에서 파트너십을 통해 소득을 수취하는 개인거주자 포함</li> <li>• 해당 국가에서 조세특례가 적용되어 세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li> </ul> </li> </ul>

- Imputation System

〈표 IV-16〉 이중과세방지제도

구 분	주주에 대한 과세
싱가포르 배당	<p>1) 원칙: 주주 입장에서 과세되나, 배당지급법인이 납부한 법인세 중 당해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주주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p> <p>2) 예외: 일반적으로 면세소득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수령하는 주주 입장에서 세금이 면제됨</p>
싱가포르에 송금된 해외배당	One-Tier시스템과 동일함

### 3) 자본이득

- 싱가포르에서 자본이득은 과세되지 않음

### 4) 금융업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가) 소득세 면제

- 다음과 같은 금융업의 역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됨
  - 소득세법 43A의 규정에 의한 ACU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특정 소득.
 

1983년 4월 1일부터 10년 이내 또는 재무부장관이 정한 이후 기간(1998년 4월 1일부터 5년 추가 연장)동안 싱가포르의 신디케이트론<sup>25)</sup>(보증, 계약이행보증, 특정 인수보증 포함)에서 ACU가 얻는 모든 이익은 당해 신디케이트론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 총괄관리자가 싱가포르 금융기관의 ACU여야 한다. 총괄관리자가 2 이상이면 최소한 절반 이상이 싱가포르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 신디케이트 과정의 대부분이 싱가포르에서 행해져야 하고, 이 사실에 대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자금의 대여자가 최소한 세 명 이상이어야 한다.
    - 역외대출에 해당해야 한다.
    - 1984과세연도부터 ACU가 승인받은 신디케이트 역외대출 또는 인수보증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면세규정이 적용. 1998과세연도부터 역외부채 발행 알선업무에서 금융기관의 얻은 수수료는 당해 증권이 금융기관에 의해 인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세금이 면제
  -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싱가포르파생상품거래정산회사(Singapore Exchange Derivatives Clearing Limited)가 얻은 일정한 소득
  - 금융기관의 ACU 또는 승인받은 펀드매니저가 관리하는 펀드에서 얻은 외국인

25) 다수의 은행으로 구성된 차관단이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차입자에게 융자해 주는 중장기 대출(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투자자의 소득. 다만, 외국인투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싱가포르에 항구적인 주소를 가져서는 안 된다.
-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영위하면 안 된다.
- 싱가포르 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수익적으로 소유하면 안 된다.
- 2003년 1월 1일부터 5년 동안 싱가포르상품거래소(Singapore Commodity Exchange: 이하 ‘SICOM’)가 얻은 일정한 소득
- 승인받은 신탁회사가 외국신탁을 관리하고 얻은 일정한 소득. 신탁의 수익자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면제된다.
- 싱가포르에 있는 ACU가 이자율스왑 또는 싱가포르달러 이외 통화스왑거래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이 규정은 비거주자가 싱가포르에 고정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CU 또는 ASC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증권대출수수료, 배당 또는 이자
-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펀드매니저가 역외펀드 또는 비싱가포르 자산펀드의 관리에서 얻은 소득
  - 싱가포르에서 최소 SGD 10조 이상의 역외펀드 또는 비싱가포르 자산펀드를 관리해야 한다.
  - 최소 7명 이상의 전문 펀드매니저와 재무분석가를 고용해야 한다.
  - 3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 싱가포르달러 이외 화폐로 표시된 주식의 기업공개업무에서 은행 또는 상업은행이 얻은 이익
- 1998과세연도부터 5년 동안 ACU 또는 ASC가 싱가포르달러 이외 화폐로 표시된 싱가포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거래에서 얻은 이익
- 승인받은 벤처회사가 최대 15년 동안 승인받은 투자에서 얻은 이익
- 은행, 상업은행 또는 승인받은 증권회사가 소득세법 43A(1)의 규정에 의해 승인받은 신디케이트 역외대출 또는 보증여신에서 얻은 이익
- 소득세법 43C에서 정한 역외생명보험 또는 역외리스크 보험 · 재보험 업무에서 승인받은 보험회사가 얻은 이익
- 소득세법 43N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부채증권의 알선 · 인수 · 유통에서 금

### 융기관이 얻은 이익

- 1999과세연도부터 싱가포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부채증권에서 얻은 이자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채증권이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채, 기업어음, 신종기업어음, 예금증서 등을 말한다.
  - 1998년 2월 28일부터 2003년 2월 27일 사이에 발행되고, 싱가포르 금융기관 (승인받은 펀드매니저 및 금융재무센터 포함)이 알선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해야 한다.
  - 1999년 2월 27일부터 2003년 2월 27일 사이에 발행되고, 승인받은 채권 중 개회사가 알선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또한 요건을 충족하는 부채증권에는 1998년 2월 28일부터 2003년 2월 27일 사이에 발행된 싱가포르 정부채가 포함. 싱가포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는 비거주자가 1999년 2월 27일부터 2003년 2월 27일까지 발행된 요건을 충족하는 부채증권으로부터 얻은 이자소득은 당해 부채증권이 고정사업장에서 얻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세금이 면제. 그러나 1999년 5월 10일 이후 발행됐고, 최초 발행시점에 인수자가 4명 이하이고, 발행기간 중 발행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직·간접접인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1999년 2월 27일부터 2003년 2월 27일까지 싱가포르 정부채 거래로부터 주된 딜러가 얻은 소득
- 2000년 11월 25일부터 금융기관의 이자율스왑 또는 통화스왑 지급금에 대해 원천징수세 면제
- 승인받은 금융보증보험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청구금에 대해서는 2000년 2월 25일부터 원천징수세 면제

## 나) 세율감면

〈표 IV-17〉 싱가포르의 금융 관련 세율감면 현황

항 목	내 용
ACU의 역외소득	10% 세율 적용(대규모 거래: 5%)
증권거래	10% 세율 적용(대규모 거래: 5년 동안 5%)
펀드관리	승인받은 펀드매니저가 외국인투자자를 위해 제공하는 역외펀드 및 비싱가포르 자산펀드 관리수수료에 대해 10% 세율 적용(대규모 거래: 5%)
역외리스크의 보험 · 재보험	보험회사가 역외생명보험 또는 역외리스크의 보험 · 재보험사업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10% 세율 적용
역외 금, 선물거래, 현물거래	싱가포르증권거래소의 선물멤버가 금괴 · 상품 · 금융선물(원유선물 포함) 거래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10% 세율 적용
승인받은 석유거래회사	외국환으로 수행되는 물리적인 거래(증개수수료 포함), 석유선물거래, 장외해징거래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5년까지 10% 세율 적용 - 5년 동안 갱신 가능 - 2001년 6월 1일 이후 승인 없음
국제적인 상품거래회사	상품 또는 상품선물거래(석유, 석유제품 제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5년까지 10% 세율 적용 - 5년 동안 갱신 가능 - 2001년 6월 1일 이후 승인 없음
금융재정센터	싱가포르 국외의 자회사 등에 요건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 5~10년 동안 10% 세율 적용
신용평가기관	최초 5년 동안 10% 세율 적용
부채증권	부채증권 거래에서 얻은 특정 소득에 대해 10% 세율 적용
승인받은 신탁회사	10% 세율 적용
승인받은 국제거래회사	특정 상 · 제품의 물리적인 거래 및 파생거래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5년 동안 5% 또는 10%의 세율 적용
상품선물거래소의 구성원	ACU 등과의 상품선물거래 또는 특정 상품에 관한 외국환거래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10% 세율 적용

## 다) R&amp;D 지원

 이중의 소득공제

- 1992년 4월 1일 이후 금융기관이 새로운 금융활동<sup>26)</sup>을 개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최대 5년(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례 연장 가능)동안 이중의 소득공제가 가능함

## 라) 운영총괄본부(Operational Headquarter)

〈표 IV-18〉 운영총괄본부에 대한 과세제도

항 목	주 요 내 용
세금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인받은 headquarter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이 경우 headquarter는 특정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국제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li> </ul>
경감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0년 동안 경영수수료 및 기타 headquarter 관련 소득에 대해 10%의 경감세율 적용</li> <li>○ 5~10년 동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자에 대해 10%의 경감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한 대출금의 이자소득</li> <li>- 지역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에게 제공한 대출금의 이자소득</li> </ul> </li> <li>○ 5~10년 동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로열티에 대해 10%의 경감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자회사 또는 관계 회사에서 로열티를 받은 경우</li> </ul> </li> </ul>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동안 세금면제</li> </ul>

26) 파생상품 거래(주식 · 환율 · 이자율옵션 포함), 파생상품과 연결된 합성증권 및 도구 개발, 기술적인 컴퓨터거래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스왑거래(일반적인 스왑거래 제외), 정교한 해징기술 및 도구를 이용한 리스크관리시스템, 해외증권에 대한 연구 등

### 3. 국제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표 IV-19〉 국제투자소득관련 과세제도

항 목	주 요 내 용
해외소득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소득은 싱가포르에서 수취해야 소득세가 과세됨</li> <li>○ 다만, 개인이 수취한 모든 해외소득과 비거주자개인이 수취한 일정한 해외배당소득, 해외지점이익, 해외원천서비스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li> </ul>
외국납부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지점이익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혜용하고 있음</li> </ul> </li> <li>○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과세연도에 싱가포르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와 해외소득금액에 유효싱가포르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혜용하고 있음</li> </ul> </li> </ul>

#### 가. 해외소득 면제

##### 원칙: 수취주의

- 싱가포르 국외에서 얻은 소득은 싱가포르에서 수취해야 소득세가 과세됨

##### 예외: 다음과 같은 해외소득은 싱가포르에서 수취해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개인(파트너십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소득을 수취한 개인 제외)이 수취한 모든 해외소득

- 비개인거주자(파트너십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소득을 수취한 개인 포함)가 수취한 일정한 해외소득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배당소득(구체적인 요건은 〈표 IV-15〉 참조)
  - 해외지점이익: 사업소득에 한해 적용되며, 이자소득이나 로열티 등과 같은 비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음

- 해외원천서비스소득: 싱가포르 밖의 고정적인 운영 장소에서 전문직서비스, 기술서비스,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 1)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 서비스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지점이익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서비스소득: 싱가포르 거주자가 싱가포르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특정 국가<sup>27)</sup>에서 특정 서비스<sup>28)</sup>를 제공하고 얻은 서비스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함
  - 배당소득: 싱가포르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 투자하여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함
    - 자회사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 지점이익: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회사가 싱가포르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 지점을 설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함

### 2)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 제약조건

---

27) 바레인, 캄보디아, 이집트, 피지, 홍콩, 이란,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라오스, 레바논, 리비아,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미국, 예멘

28) 회계, 건축, 컴퓨터 관련 서비스, 건설, 엔지니어링, 법률, 의료, 전시회의 조직·관리, 항구·호텔경영, 경영자문서비스, 기술서비스(연구개발, 기계장치 및 공장의 제작·유지·수선, 제품 및 장치의 시험), 승인받은 headquarter, 승인받은 금융재정센터가 공급하는 서비스 및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서비스

- 당해 과세연도에 싱가포르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원천징수세 제외)를 초과할 수 없음
- 적절한 비용공제 후 해외소득금액에 유효싱가포르세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유효싱가포르세율 계산방법

- 일반적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되며, 20%를 초과할 수 없음

〈표 IV-20〉 유효싱가포르세율의 계산

구 분	유효싱가포르세율
회 사	싱가포르 법인세율. 다만, 해외소득에 대해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0%.
개 인	$\text{유효싱가포르세율} = A / [(B+C)-D] - E$ <p>A: 세액공제 반영 전 싱가포르 납부세액            B: C를 제외한 싱가포르소득            C: 조세조약체결국가에서 발생한 해외소득            D: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승인받은 기부금            E: 인적공제</p>

해외배당 · 이자 · 사용료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 [Step 1] 유효싱가포르세율 계산
- [Step 2] 유효싱가포르세율과 외국세율 비교
- [Step 3] Re-grossed Foreign Income 계산

〈표 IV-21〉 외국납부세액공제의 Re-grossed Foreign Income

구 分	Re-grossed Foreign Income
유효싱가포르세율>외국세율	외국납부세액 공제 후 수취한 해외소득/(1-외국세율)
유효싱가포르세율<외국세율	외국납부세액 공제 후 수취한 해외소득/(1-유효싱가포르세율)

○ [Step 4] 공제 가능한 외국납부세액 계산

공제 가능한 외국납부세액 = Re-grossed Foreign Income – 외국납부세액 공제 후 수취한 해외소득

## 4. 시사점

### 재정측면

- 싱가포르 정부의 2007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SGD 0.68조의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정부의 예산안은 기타수입의 두 가지 중요한 원천 즉, 국유 토지 임대료와 주식투자수입에 있어 투명성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실제로는 흑자재정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sup>29)</sup>.
- GDP 대비 낮은 재정지출비율과 정부 잉여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에서 발생한 높은 투자수입<sup>30)</sup>, 싱가포르 전체 토지의 85%에 상당하는 국유 토지 등으로 인해 조세수입에의 의존도가 낮음.
  - 소득세는 가장 중요한 운영수입의 원천으로 일반적으로 전체 운영수입의 약 40~50%에 달하며, 이 중 법인세는 전체 소득세 세수의 2/3~3/4에 달함
- 도시국가가 갖는 인적, 물적자본 투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자본집약적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세제도 운영

### 금융허브 성공요인: 비조세정책

29) 싱가포르 정부의 2007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타수입이 전체 운영수입의 약 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Asher(2002)는 1992년부터 1999년까지 기타수입이 싱가포르 정부 전체 수입의 26~39%에 달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

30) 정부의 잉여자금은 싱가포르통화청, 싱가포르투자청, 테마섹이 주축이 되어 운용하고 있다.

〈표 IV-22〉 금융허브 성공의 비조세적 요인

친기업적인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년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함</li> <li>○ 6일이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함</li> <li>○ 기업·경제·규제 업무에 있어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li> <li>○ 안정적인 정치구조 및 사법시스템</li> </ul>
뛰어난 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교한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어디와도 거래가 가능하며, 서비스 및 가격에 있어 아시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통신허브로서 인식되고 있음</li> <li>○ 60편 이상의 국제선을 통해 51개국 152개 도시에 쉽게 갈 수 있음</li> <li>○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AAA 등급에 해당하며, PERC 조사에서 6년 연속 아시아 최고의 사법체제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음</li> </ul>
숙련된 노동력과 인재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 인력을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인재 또는 전문가에 대해 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음</li> <li>○ BERI의 조사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li> <li>○ 2004년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 중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매력도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함</li> </ul>
기회지역에의 전략적인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남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에 공헌할 수 있음</li> <li>○ 24시간 외환거래와 증권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럽 및 미국센터뿐만 아니라 아시아 센터와도 24시간 거래가 가능함</li> <li>○ 중국·인도와 근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의 주요 경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음</li> </ul>

□ 금융허브성공요인: 조세정책

- 50개 이상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 금융기관의 역외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감면세율 적용, R&D비용에 대한 이중의 소득공제, Headquarter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 이자·배당·자본이득에 대한 광범위한 비과세·면제 혜택의 제공으로 금융기관과 그 투자자에게 낮은 세금을 부과
- 2005년 CD Howe의 세금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유효세율을 갖고 있는바, 낮은 조세부담은 금융기관의 원가경쟁력으로 연결됨
- 그러나 경쟁국인 홍콩 등에 비해 조세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과세·면제

소득을 열거주의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나타날 때마다  
열거항목이 증가하여 조세의 복잡성이 증가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면제는 과세권의 이  
전만을 초래할 뿐 실질적인 조세감면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법인세  
를 인하하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재정수입을 보전하고 있어 조  
세의 역진성이 심화될 가능성 있음

## V. 홍콩

### 1. 금융부문 현황

#### 거시경제 현황

- GDP 성장률이 2004년에는 8.6%, 2005년에는 7.5%, 2006년에는 6.8%로 조금씩 둔화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2006년 금융서비스 산업이 홍콩 GDP의 13%를 차지하고 있음

〈표 V-1〉 거시경제 현황

(단위: US\$, %)

	2004	2005	2006
실질GDP(10억)	165.6	177.2	188.8
실질GDP성장률	8.6	7.5	6.8
1인당GDP	24,000	26,000	27,500
실업률	7.9	6.8	5.6

자료: 홍콩투자청([www.investhk.gov.hk](http://www.investhk.gov.hk))

#### 외국인 직접 투자현황

- 외국인 직접투자가 2004년도에 150% 증가하는 등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5년까지 홍콩에 직접 투자한 누적금액을 주요 투자국별로 살펴보면, 중국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가 각각 30%씩을 점유하고 있음

〈표 V-2〉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USD10억, %)

	2002	2003	2004	2005	2006
투자액	9.7	13.6	34.0	35.9	42.7
증가율		40.21	150	5.59	18.94

자료: 홍콩투자청([www.investhk.gov.hk](http://www.investhk.gov.hk))

〈표 V-3〉 주요투자국

(단위: USD10억)

외국인직접투자액(2005년 누적, 시장가치)	
중국	163.0
영국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162.9
네덜란드	41.9
버뮤다	34.8
미국	26.4
일본	16.9
영국	11.4
싱가포르	10.8
케이맨제도(Cayman Islands)	8.6
태국	4.3
기타	39.1
총계	520.0

자료: 홍콩투자청([www.investhk.gov.hk](http://www.investhk.gov.hk)) 재인용(Report on External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of Hong Kong 2005,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외국기업 진출현황

- 2006년 말 기준으로 홍콩에서 운영중인 외국기업은 총 6,354개이며, 지역본부 (Regional Headquarters)가 1,228개,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가 2,617 개, 지사(Local Office)가 2,509개로 나타남
- 홍콩에서 운영중인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들이 진출한 업종을 살펴보면 도소 매·무역업이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음
- 홍콩에서 운영중인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는 미국의 295사, 일본의 212사, 영국

의 114사 등이 진출해 있음

〈표 V-4〉 외국기업 진출 현황

(단위: 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지역본부	944	948	966	1,098	1,167	1,228
지역사무소	2,293	2,171	2,241	2,511	2,631	2,617
계	3,227	3,119	3,207	3,609	3,798	3,845
지사	1,230	1,748	2,207	2,334	2,474	2,509
총계	4,467	4,867	5,414	5,943	6,272	6,354

자료: 홍콩투자청([www.investhk.gov.hk](http://www.investhk.gov.hk))

〈표 V-5〉 업종별 지역본부의 수(2006년 기준)

(단위: 개)

업종	지역본부수
도소매, 무역	643
사업서비스	270
운송 및 관련분야	115
금융 및 은행	93
제조	91
건설, 설계, 토목	39
통신서비스	20
보험	19
음식료 및 호텔	13
부동산	12

자료: 홍콩투자청([www.investhk.gov.hk](http://www.investhk.gov.hk)) 재인용(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금융시장 일반 현황

- 총통화량은 M3를 기준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저축예금을 기준으로 한 이자율은 2004년까지는 제로금리에 가까웠으나 2005년 이후 2%대를 유지하고 있음

- 홍콩은 1983년 이래로 US\$1=HK\$7.8로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약간의 변동은 허용되고 있음
- 홍콩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2002년 HK\$3,559에서 2006년 \$13,248로 약 3.7배 증가했으며 항셍지수도 그 사이 2배 이상 상승했음

〈표 V-6〉 주요 금융지표

(단위: HK\$ 10억, %)

		2002	2003	2004	2005	2006
총통화량	M1	295	413	484	434	491
	M2	3,518	3,813	4,166	4,379	5,063
	M3	3,561	3,858	4,189	4,407	5,098
이자율	3달은행간	1.41	0.07	0.28	4.16	3.84
	저축예금	0.03	0.01	0.01	2.32	2.26
	대출금리	5.00	5.00	5.00	7.75	7.75
환율	HK\$/US\$	7.798	7.763	7.774	7.753	7.775
주식시장	항셍지수	9,321	12,576	14,230	14,876	19,965
	시가총액	3,559	5,477	6,629	8,113	13,248

자료: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Annual Report 2006  
<http://www.info.gov.hk/hkma/index.htm>

#### □ 은행업의 현황

- 홍콩에는 3가지 유형의 예금 금융기관이 있음
  - 인가은행(licensed bank)은 당좌예금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예금을 취급
  - 제한인가은행(restricted license bank)은 당좌예금, 요구불예금 및 소액예금(HK\$50만)은 수취가 불가함
  - 예금수취회사(Deposit taking companies)는 요구불예금, 소액예금(HK\$10만), 단기예금(3개월미만)은 수취불가함
  - 인가은행은 홍콩은행협회의 회원이 되며, 제한인가은행 및 예금수취회사는 예금수취회사협회의 회원이 됨
- 홍콩에서 운영중인 은행의 수는 2006년 현재 202개로 경제규모에 비하여 많은

-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로는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줌
- 2006년 현재 자산규모 세계상위 20위 은행은 모두 홍콩에 진출해 있는 상태이며, 상위 100개 은행 가운데 69개의 은행이 홍콩에 진출해서 영업을 하고 있음

〈표 V-7〉 홍콩 금융기관 수

(단위: 개)

		2002	2003	2004	2005	2006
인가은행	국내법인	26	23	24	24	24
	외국법인	107	111	109	109	114
	계	133	134	133	133	138
제한인가은행	국내법인	2	1	1	0	0
	외국법인	12	11	10	8	8
	외국은행지점	26	24	23	21	20
	기타	6	6	6	4	3
	계	46	42	40	33	31
예금수취회사	국내법인	14	9	7	6	5
	외국법인	4	3	2	2	3
	외국은행지점	15	15	14	13	13
	기타	12	12	12	11	11
	계	45	39	35	33	33
은행계		224	215	208	199	202
지역사무소		94	87	85	86	84

자료: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Annual Report 2006  
<http://www.info.gov.hk/hkma/index.htm>

〈표 V-8〉 홍콩에서 영업중인 세계 상위 500개 은행

(단위: 개)

	2002	2003	2004	2005	2006
1~20위	20	20	20	19	20
21~50위	23	23	22	25	23
51~100위	30	32	28	27	26
101~200위	42	44	42	39	37
201~500위	53	51	45	47	50
계	168	170	157	157	156

자료: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Annual Report 2006  
<http://www.info.gov.hk/hkma/index.htm>

□ 증권업의 현황

-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수는 2006년 975개사로 2004년에 비해 약 10% 정도 증가함
- 반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펀드의 수는 2004년 1,971개에서 2006년 3,184개로 약 60%의 급속한 증가를 보여줌
- 선물옵션시장에서는 주가지수 상품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자율상품의 계약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홍콩의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는 2006년 현재 주식시장의 41%, 파생상품 시장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 2006년 기준으로 홍콩 주식시장에 투자한 외국인의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 각각 26%, 24%로 두 나라가 외국인투자의 50%를 점유하고 있음

〈표 V-9〉 홍콩의 증권시장

			2004	2005	2006
주식시장	상장회사수	내국법인	892	934	975
		외국법인	882	925	967
		상장펀드	1,971	2,448	3,184
	거래량	일평균 거래수	147,114	147,385	255,596
		일평균 거래금액 (HK100만\$)	15,856	18,210	33,735
	계약수	지수상품	13,939,321	16,761,114	24,662,509
		증권상품	17,274	13,069	102,010
		이자율상품	61,265	26,431	14,043

자료: 홍콩증권거래소(HKEx), JKEx Fact Book 2006

〈표 V-10〉 홍콩 증권시장의 투자자 구성

(단위: %)

		2004		2005		2006	
		주식	파생	주식	파생	주식	파생
Exchange Participants' principal trading		7	38	8	35	5	47
국내 투자가	개인	34	29	30	26	27	21
	기관	22	10	27	10	26	8
	계	57	39	56	36	53	29
국외 투자가	개인	3	2	2	3	3	2
	기관	33	21	34	26	39	21
	계	36	23	36	29	41	23
총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홍콩증권거래소(HKEx), JKEx Fact Book 2006

〈표 V-11〉 홍콩 증권시장 국외 투자자의 국가 구성

(단위: %)

		2004		2005		2006	
		주식	파생	주식	파생	주식	파생
미국		25		29		26	18
유럽	영국	28		25		24	33
	영국 제외 유럽	24		22		23	19
아시아	일본	3		3		3	1
	중국	7		5		5	
	대만	1		1		1	1
	싱가포르	8		8		9	11
	기타 아시아	1		1		2	2
기타		3		6		6	9

자료: 홍콩증권거래소(HKEx), JKEx Fact Book 2006

## 2. 소득 관련 조세제도

### 가. 일반조세제도

#### 1) 일반적인 사항

- 홍콩은 단순하면서도 낮은 세율을 지향하는 조세체계를 지니고 있음
- 홍콩의 세법은 홍콩세무조례(IRO-Inland revenue Ordinance) 형태로 규정됨
- 홍콩의 과세연도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 주요 세목은 이윤세(profit tax), 근로소득세(salaries tax), 재산세(property tax)로 구성됨
- 홍콩에는 부가가치세(VAT),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상속세(inheritance tax) 및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contribution) 등이 없음
- 홍콩은 거주자(residents)와 비거주자(non-resident) 간에 차이를 두지 않음
- 납세의무자(taxable persons)는 기업(corp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개인(body of person)으로 구성됨(IRO Sec. 2(1))
- 소득이 세법에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사무소나 고용으로부터의 소득(IRO Sec. 9)
  - 영업(trade), 전문직(profession) 또는 사업(business)으로부터의 평가가능 이익(assessable profit) (IRO Sec.15)
  -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치(assessable value) (IRO Sec.5)

#### 2) 이윤세(profit tax)

##### 납세의무자

- 홍콩에서 영업<sup>31)</sup>(trade), 전문직<sup>32)</sup>(profession) 또는 사업<sup>33)</sup>(business)을 수행하는 기업, 파트너십, 개인

□ 과세대상 소득

-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과 홍콩으로부터 유래된 소득<sup>34)</sup>
- 규정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영업소득으로 간주하는 소득(IRO Sec. 14, 15)

□ 면제 및 공제(손금산입 포함)

○ 이자소득의 면제

- 1998년 7월 22일 이후로 홍콩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개인과 법인 모두 이자소득세를 면제함
- 그렇지만, 이자비용은 공제가능함

○ 공제항목(손금산입 포함)

- 과세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관해서는 영토의 제한없이 공제 가능함
- 홍콩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에서 규정한 특정지출에 대한 공제
- 결손금(losses)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 공제할 수 있으며, 이월 공제 기간은 제한이 없음
-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그룹에 속한 회사들 간의 연결공제는 협용되지 않음

○ 자본공제(감가상각, Capital Allowances)

□ 세율

- 주식회사 17.5%, 비주식회사 16%

31) 영업(trade)에는 제조업, 금융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됨(IRO Sec. 2(1))

32) 전문직(profession)의 범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고용되지 않은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이 해당함

33) 사업(business)은 농업 및 축산업과 그 관련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음(IRO Sec. 2(1))

34) 홍콩으로부터 유래된 소득에 대한 범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며, 홍콩 국세부(Inland Revenue Department)에서 1998년 3월에 발행한 “the revised 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 No.21”에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3) 재산세(property tax)

- 세율 : 16%
- 과세대상 : 토지 또는 건물의 평가가치(net assessable value)
- 납세의무자 : 홍콩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주
- 면제 및 경감
  - 정부나 영사관의 자산은 면제함
  - 이윤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자산소득세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 4) 근로소득세(Salary tax)

- 세율 : 누진세율의 구조이며, 2006~2007년도에는 이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1%P 세율을 인하하였음

〈표 V-12〉 근로소득세 과세구간 및 세율

(단위: %)

과세구간(HK\$)	세율
0~30,000	2
30,000~60,000	7
60,000~90,000	13
90,000 초과	19

- 납세의무자
  - 개인의 거주지, 주소 혹은 시민권에 상관없이 홍콩 원천의 급여소득자가 납세의 무자임
    - 홍콩 원천의 급여소득자의 여부는 고용계약에 의해 판단함

□ 과세대상

- 홍콩 원천의 급여소득, 연금소득, 홍콩에서 운영되는 사무소에서의 소득

□ 기타

- 원천징수제도가 없기 때문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함
- 부부의 경우 개별과세 되지만, 합산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음

#### 나. 금융소득 관련 조세제도

□ 홍콩에서 개인은 이자 및 배당소득세,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가 없으므로  
금융 관련 소득의 발생 시 일반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

- 규정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영업소득으로 간주하는 소득(IRO Sec. 14, 15)  
의 항목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윤세로 과세될 수 있음
  - 홍콩에서 수행된 사업과 관련하여 채권 또는 정기예금증서의 처분 및 만기상환 등으로 금융기관에 발생한 수입(그러나 이자소득 면제규정에 따라 면제가 가능)
  - 법인의 비사업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이자수입(그러나 이자소득 면제규정에 따라 면제가 가능)
  - 법인의 비사업 관련 정기예금증서의 처분, 채권의 할인 및 만기상환과 환어음 등으로부터의 수입이자 및 처분이익

□ 펀드(funds)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세금의 면제가 규정되어 있음

□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인지세가 부과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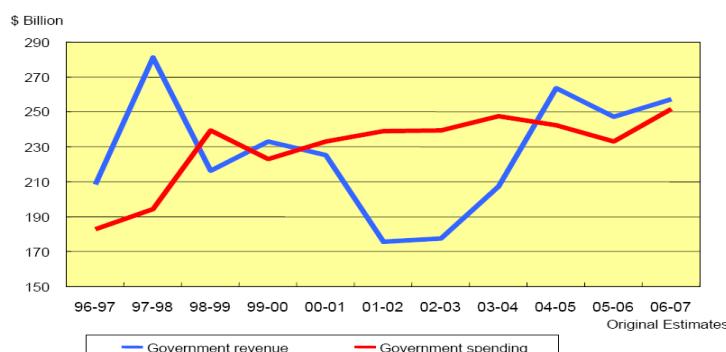
- 부동산, 리스, 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인지세(Stamp duty)를 부과함
- 주식거래에 대한 인지세는 HK\$1,000당 HK\$2로 0.2%의 세율로 부과됨
- 주식거래에 따른 인지세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반반씩 부담함
- 신탁펀드(trust funds)에 대한 인지세는 금액에 상관없이 \$5 정액으로 부과됨

### 3. 시사점

#### 가. 재정측면

- 홍콩 정부는 낮은 세율과 좁은 세원의 조세체계를 유지해 옴에 따라 1990년대 후 반부터 심각한 재정적자를 경험함
  - 그러나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이자 및 배당,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장을 통한 세수확보를 추구
    - 홍콩정부의 재정수입은 80%의 조세수입과 20%의 기금으로 구성됨
- 최근 홍콩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재정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됨
  - 홍콩은 이윤세와 근로소득세가 전체 재정수입의 45%를 점유할 정도로 직접세의 비중이 높음
  - 직접세의 비중이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따라 정부의 재정 수입이 민감하게 반응함
- 세원 확대와 안정적인 조세수입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상품소비세 (Goods and Service Tax)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중
  - 2007-08 예산안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 단계임

[그림 V-1] 홍콩정부의 재정수지



자료: 홍콩의 2007~08 budget

## 나. 금융허브로 성장한 요인

### 1) 조세 이외 요인

#### □ 지리적 이점 및 중국과의 연계성

##### ○ 지리적 이점

- 홍콩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앙에 위치하여 모든 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함
- 홍콩의 시간대는 북미와 유럽지역의 시간대 차이를 메꾸는 위치에 있어서 세계 금융시장이 하루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함

##### ○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연계성

- 중국은 홍콩의 최대 교역상대국임
- 홍콩의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중국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3년에 중국과 홍콩 간에 체결된 긴밀경제협력협약(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에 따라 홍콩을 통한 중국진출이 더욱 용이해짐

#### □ 자유로운 시장과 사회적 인프라

##### ○ 규제없는 자유시장

- 1841년 자유무역항이 된 이후로 특별한 세관신고제도가 없음
- 외환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규제가 없음
- GATT가 규정한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의 준수
- 이에 따라 외국은행이나 금융기관이 홍콩 진출을 허가받으면 역내금융, 역외금융, 외환 및 홍콩달러업무 등 은행의 모든 업무를 내국은행과 동일하게 영위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을 막론하고 내국기업의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이 없음

##### ○ 사회적 인프라

-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함에 따라 국제 업무에 적합한 노동력 제공이 가능함

- 현대식 공항인 책랍콕(Chark lap kok) 공항과 항만을 구비함
- 현대적인 정보통신시스템을 구비

## 2) 조세 요인

### □ 낮은 세율

- 법인세에 해당하는 이윤세의 세율이 17.5%의 수준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최저 수준임

### □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 자본이득세, 배당소득세 및 이자소득세가 없음

### □ 해외소득 비과세

- 홍콩 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의 소득에만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해외원천의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

## 참고문헌

- 권순우, 『외국인 직접투자 부진의 원인과 처방』, 삼성경제연구소, 2003. 1
- 안종석 · 최준욱, 『국제조세 회피의 행태 및 경제적 효과분석』 2003, 한국조세연구원.
- 이재철, 『외국인 채권투자 원천징수 없애야』, 「서울경제」, 2007. 02
- 안형도 · 유재원 외,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12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아일랜드의 경제 · 통상 · 투자 환경 안내 자료」, 2006. 5
- 홍콩투자청 홈페이지([www.investhk.gov.hk](http://www.investhk.gov.hk))  
([www.info.gov.hk/hkma/index.htm](http://www.info.gov.hk/hkma/index.htm))
- 홍콩증권거래소(HKEx), *JKEF Fact Book 2006*
- 홍콩 국세청 홈페이지([www.ird.gov.hk](http://www.ird.gov.hk))
- 홍콩의 2007–08 budget([www.budget.gov.hk](http://www.budget.gov.hk))
- 한국금융연구원, 「싱가포르의 금융산업 관련 발전전략이 주는 시사점」, 주간 『금융  
브리프』 16–11, 2007.3.12.
- 한국은행, 「홍콩 및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과정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  
점」, 『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제165호, 2003.11.
- 「매일경제신문」, 2006년 5월 10일자.
- “Annual Report(2006) & Annual Report(2005),” [www.mas.gov.sg](http://www.mas.gov.sg)  
Asia-Pacific–Taxation & Investment Database, [www.ibfd.org](http://www.ibfd.org)
- Belaid Rettab, “DCCI 2003 Survey; Structure & Performance of Dubai Major  
Economic Sectors,”
- “BIS Quarterly Review,” 2007.3, [www.bis.org](http://www.bis.org)
- Donghyun Park,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Corporation Taxation: Overview

- of the Singapore Experienc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Annual Report 2006  
Hong Kong Tax 2006–07 A Pocket Guide, PriceWaterhouseCoopers  
IDA Ireland, *Study on 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Sector in Ireland*, 2004.9  
\_\_\_\_\_, *Ireland Vital Statistics*, 2006.9  
IMF, “United Arab Emirates: 2006 Article IV Consultation,” Country Report  
No.06/257  
Jay Squalli, “Are the UAE Financial Markets Efficient?,” Working Paper  
No.05–01 October 2005  
KPMG in Ireland, *Investment in Ireland*  
Revenue, *Dividend Withholding Tax –General Information Leaflet*, 2001.6  
\_\_\_\_\_, *Tax Credits, Reliefs and Rates for the Tax Years 2006 and 2007*,  
2007.1  
\_\_\_\_\_, *Guide to Capital Gains Tax*, 2005.9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in Singapore,” 2007.3., [www.mas.gov.sg](http://www.mas.gov.sg)  
“Singapore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Gateway to opportunities in Asia  
and beyond,” [www.mas.gov.sg](http://www.mas.gov.sg)  
“Technical Central Bank Survey(Foreign exchange and derivatives market  
activity in 2004),” 2005.3., [www.bis.org](http://www.bis.org)
- DIFX, “Duide to the DIFX,” <http://www.difx.ae/about/>,  
IBFD, [http://online2.ibfd.org/data/me/Country\\_Analyses/me\\_ae.0018.html](http://online2.ibfd.org/data/me/Country_Analyses/me_ae.0018.html)  
<http://www.dubaided.gov.ae/main/gn/DubaiEconomy/QuarterlyIndicators.htm?o=/main/gn/DubaiEconomy>  
<http://www.centralbank.ae/bsed/licences.php>  
[http://www.worldwide-tax.com/ireland/ireland\\_tax.asp](http://www.worldwide-tax.com/ireland/ireland_tax.asp)  
<http://www.revenue.ie>

<http://www.taxworld.ie/legislation/TCA1997/2006/28>

세법연구 07-07  
금융허브 국가들의 조세제도

---

2007년 11월 23일 인쇄

2007년 11월 29일 발행

저 자 전병목 · 기은선 · 정희선 · 조진권 · 박임수

발행인 황 성 현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2186-2114(대) [www.kipf.re.kr](http://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 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7 ISBN 978-89-8191-365-6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